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박기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7
----------	------

발의연월일 : 2017. 6. 8.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 오봉수, 성백진, 김용석(도봉),  
박진형, 김창원, 서영진,  
유동균, 김창수, 장인홍,  
강구덕, 오경환, 문형주,  
강성언, 김생환 의원(14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차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사의 역할) 교사는 제8조제3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중립자로서 논쟁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2. 자신의 견해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3. 개방적인 수업 문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특정의 사실이나 근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
5. 사회적 주장이나 사실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한다.
6. 학생들이 공격성을 보일 때는 논리적 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7. 표정이나 몸짓, 목소리를 통해 교사의 호·불호의 감정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학생들이 거론하지 않는 중요한 논쟁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논쟁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